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9월 1일

군산시 규칙 제901호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와 관계서류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일은 해당 의원임기 개시일 전에 사무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부득이한”을 “질병, 출산, 사고, 공무 출장 등 부득이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을 “ 의장이 허가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

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 간 결선투표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제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견발표 시 시각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우의”를 “경우”로, “같이”를 “동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를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연장”을 “연장 또는 단축”으로 한다.

제13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의 개의 시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후단 중 “변경할 때 또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 부터”를 “제13조에 따라 정한 개의 시부터”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이르지 못

한 경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 되거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재개”를 “속개”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한다)으로 하여금”을 “한다)이”로, “해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면으로 알려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 본회의 발언시기 전일”을 “집회공고일부터 본회의 개의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일) 10시”까지,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제출한 요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자유발언은 한 회기 중 1인 1회로 한정한다. 다만, 다른 신청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지 아니한 의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유발언 내용 중 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추진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 예정일을 해당 의원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횟수의 제한)”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후단 중 “회수”를 “횡수”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본문 중 “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 예정일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기 중 긴급하게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답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항 단서의 기한 내에 답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 예정일을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답변을 연기할 수 있다.

제8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제82조 중 “의장은”을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을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청권의 종별”을 “본회의 방청권”으로, “정기방청권”을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88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u>	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와 관계서류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u>
제3조(의석 배정) ① <u>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u> ② (생략)	제3조(의석 배정) ① ----- - <u>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회식) <신설> ① · ② (생략)	제4조(개회식) ① <u>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일은 해당 의원 임기 개시일 전에 사무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u>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u>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질병, 출산, 사고, 공무 출장 등 부득이한 -----

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8.1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 ⑥ (생략)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생략)

-----.

-----.

② -----의장이 허가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최고득표자가 1명인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

2.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고득표자 간 결선투표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생략)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
의 후보자등록) ① (생략)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
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
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
의 후보자등록)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정견발표 시 시
각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

- 경우 -----
----- 동시에 -----.

② -----

-----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3조(개의) 본 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개의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
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
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
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미리

-.
-.

제12조(회기) ① -----
----- 연장 또는 단
축-----.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의) 본회의의 개의 시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정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에 따라 정한
개의 시부터 -----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
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
다고 인정 되거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 (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 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생략)

제32조의2(자유발언) ① (생략)

②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발언시기 전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 . ----- 속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다)이 -----
----- 하여
야 --.

③ -----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하여야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집회공고일부터 본회의
개의 전일(해당일이 토요일, 공
휴일이면 그 전일) 10시 까지--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제출한
요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제72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생략)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은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자유발언은 한 회기 중 1인 1회로 한정한다. 다만, 다른 신청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최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지 아니한 의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유발언 내용 중 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추진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 예정일을 의장과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
----.

제58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회수
및 시간 -----
----.

제72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안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 제

④ (생 략)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생 략)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 하고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 예정일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기 중 긴급하게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답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 단서의 기한 내에 답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 예정일을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답

③ (생 략)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 6. (생 략)

제82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3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생 략)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정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생 략)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 8. (생 략)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변을 연기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

-----.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 6. (현행과 같음)

제82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
-.

제83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의 방청권-----
----- 장기방청권-----
--.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7.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4건, 폐지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6. 8. 1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6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6	20260814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2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4길 6	-	20260814	건물철거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3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2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표산길 30-3	20260810	건물신축	20070528	표산마을 소재	
4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죽동2길 46	-	20260811	건물철거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	20070528	세장리 죽동 마을 소재	
5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 동 1107-1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 산단2로 96 (오식도동)	20260807	건물신축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6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흥동 72-11, 71-6, 72-1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길 24-2 (신흥동)	20260806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7	건물번호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길 24-2 (신흥동)	-	20260806	건물철거에 의한 건물번호 폐지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십자들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십자들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 칭 : 십자들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위치, 규모, 총사업비

가. 위 치 :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64-4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흙깎기 4,282 m^3 , 구조물 터파기 203 m^3 , 수로관설치 L=566m,
보도포장 220 m^2 , 콘크리트포장 10 m^2 , 부대공 1식 등

다. 총사업비 : 1,11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5. 1. ~ 2027. 12.

5.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토사유실 및 산사태,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배수로 및 사면정비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5년	'26년	'27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기본 설계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사면정비	
총 사업비	1,100	20	1,080		
· 국 비	550	10	540		
· 지방비	550	10	540		

9.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18 -

							562				
						문*종	임피면 월하리 544				
						문*렬	임피면 월하리 599				
						문*남	임피면 월하리 566				
4	나포 면주 곡리	164-5	전	625	435	문*희	임피면 월하리 585				
						문*선	임피면 월하리 591				
						문*익	임피면 월하리 587				
						문*규	임피면 월하리 537				
						문*호	임피면 월하리 562				
						문*종	임피면 월하리 544				
						문*렬	임피면 월하리 599				
						문*남	임피면 월하리 566				
5	나포 면주 곡리	164-4	전	288	288	문*희	임피면 월하리 585				
						문*선	임피면 월하리 591				
						문*익	임피면 월하리 587				
						문*규	임피면 월하리 537				
						문*호	임피면 월하리 562				
						문*종	임피면 월하리 544				
						문*렬	임피면 월하리 599				
						문*남	임피면 월하리 566				
6	나포 면주 곡리	164-9	전	902	551	문*희	임피면 월하리 585				
						문*선	임피면 월하리 591				
						문*익	임피면 월하리 587				
						문*규	임피면 월하리 537				
						문*호	임피면 월하리				

							562				
						문*종	임피면 월하리 544				
						문*렬	임피면 월하리 599				
						문*남	임피면 월하리 566				
7	나포 면주 곡리	164-1 0	대	436	436	문*희	임피면 월하리 585				
						문*선	임피면 월하리 591				
						문*익	임피면 월하리 587				
						문*규	임피면 월하리 537				
						문*호	임피면 월하리 562				
						문*종	임피면 월하리 544				
						문*렬	임피면 월하리 599				
						문*남	임피면 월하리 566				
8	나포 면주 곡리	164-1 1	대	231	231	문*희	임피면 월하리 585				
						문*선	임피면 월하리 591				
						문*익	임피면 월하리 587				
						문*규	임피면 월하리 537				
						문*호	임피면 월하리 562				
						문*종	임피면 월하리 544				
						문*렬	임피면 월하리 599				
						문*남	임피면 월하리 566				
9	나포 면주 곡리	124-3	임	126,21 2	127	남평*씨참 의공파황중 진회	임파면 월하리 595-1				
10	나포 면주 곡리	164-1 2	전	139	139	문*희	임피면 월하리 585				
						문*선	임피면 월하리 591				
						문*익	임피면 월하리 587				

						문*규	임피면 월하리 537				
						문*호	임피면 월하리 562				
						문*중	임피면 월하리 544				
						문*렬	임피면 월하리 599				
						문*남	임피면 월하리 566				
계				130,55 6	3,104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군산시)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나포면 주곡리	164- 4	본건물	스레트	90.3㎡	채*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 37-17	
			창고	철재	28㎡			
			비닐하우스		30㎡			
			대문		1식			
			담장	조적	21m			
2	나포면 주곡리	164- 10	본건물	조립식	63.4㎡	고*주	경기도 오산시 은어울로67번길 5, 303호 (은계동, 오복빌딩)	
			창고	스레트	70㎡			
			창고	스레트	60㎡			
			대문		1식			
			담장	함석	24m			
			감나무		1주			
3	나포면 주곡리	164- 11	본건물	스레트	40.5㎡	소유주 불명		
			대문		1식			
			수목		1주			
4	나포면 주곡리	164- 12	본건물	스레트	99㎡	소유주 불명		
			창고	스레트	37.6㎡			
			대문	대문	1식			
			감나무		1주			

군산시 무녀1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무녀1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무녀1지구 연안의 해일·파랑 및 해수로 인해 훼손된 연안을 보호하고, 해수범람·배수불량 등 연안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식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업 시행 장소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36-1번지 일원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구분	사업 시행자	사업 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무녀1지구 연안정비사업	연안 보전	군산시장	호안(파라펫보강) 720m	1,292	‘24. 1. ~ ‘27. 3.

4.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군산시 항만해양과에서 열람 가능

- 열람 장소: 군산시청 항만해양과(☎063-454-2813)

군산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비응도동 36-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비응도동 36-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사업
 - 나. 명 칭 : 에스지씨그린파워 창고동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금회 발전시설 주9동/지상2층 연면적 850.5m²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에스지씨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 박준영
 -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1331(비응도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7. 0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비응도동	36-23	잡	54,575.0	1,050.0	에스지씨 그린파워 주식회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1331(비응도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근저당
	1필지		54,575	1,050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지정고시(변경)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변경)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산물 수출촉진·가공산업·시장개척·투자유치 육성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관리기관에 위임), 제33조, 제6항(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군 산 시 장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지정사항

1.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약칭,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 위 치 :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2공구, 오식도동 1107~1108, 1122~1128
- 면 적 : 266,073m²

2.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지정목적

-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수산식품산업 특화하여 스마트기반 수출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 김산업 스마트 융복합 등 미래 첨단 산업 선도하여 글로벌 블루푸드테크 식품단지 조성

3.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관리기관

○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 관리기관 : 군산시

○ 위탁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6-18호, 2026. 7. 9., 일부개정.]

4.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조성계획

○ 유치업종 : 수산식품분야 10(식료품제조업) 및 1·2·3차산업융복합(식료품제조업)

(단위 : m²)

구분(업종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개소(개)	운영주체
		분양(개)	임대(개)	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8,465,287	-	-	18,465,287	-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합계	266,073	15	9	266,073	24	-
스마트수산가공센터	33,029	1	-	33,029	1	군산시
민간 공장시설(분양)	134,221	13	-	134,221	13	민간업체
민간 공장시설(임대)	50,977	-	9	50,977	9	민간업체
김산업 블루푸드테크 센터*	47,846	1	-	47,846	1	군산시

- 민간업체 분양·임대 면적 및 업체수는 신청사항 및 군산시 입주심사 결과 따라 변동가능

※ 김산업 블루푸드테크 센터 : 28~32년까지 김산업 스마트양식 융복합 사업 추진예정, 사업 추진 불가시, 민간기업 등 분양으로 조성계획 변경추진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33,366	266,073	266,073	100.0	
산업시설용지	133,366	266,073	266,073	100.0	
- 단지조성	133,366	266,073	266,073	100.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

○ 단지내 내부도로

사도개설	설치목적	시설내용
공공 군산시 공장시설 내 내부도로	수산물식품단지 입주업체 공용도로	사도개설 허가(군산시 제2025-1호), 도로(폭 15m, 길이 608m), 우수, 오수, 하수, 해수 인배수 관로

■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

구분	주요 기반 시설		근거
교통 시설	도로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 새만금 동서남북로 ○ 도로 308개, 폭원 11~40m, 2~8차로, 연장 127km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 기반시설 현황
	철도	○ 군장국가산단 인입 철도(운용, 단선) / 새만금항 인입철도(계획 중)	
	항만	○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공항	○ 군산공항(운용 중) / 새만금 신공항(기본계획 중)	
공급 시설	용수	○ 공업용수 연간 수요량 401천톤/yr ○ 금강 광역상수도(공업)	
	전력	○ 전력사용량 예측 5,185.1MW/yr	
	가스	○ LNG 100,000m ³ /hr 공급(군산2국가산단)	
환경 기초	오폐수 처리	○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 운영(43천톤/일, 산단 내 오·폐수 통합이송펌프장 운영)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m ³)	
해수 시설	해수 공급	○ 해수 취수 및 공급시설 3만톤/일	새만금 수산물식품 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
	해수 처리	○ 해수 세척수 공동배출시설 2만7천톤/일	
기 반	내부 도로	○ 사도개설 허가(군산시 제2025-1호), 도로(폭 15m, 길이 608m), 우수, 오수, 하수, 해수 인배수 관로	

6. 관련지정계획 열람방법

가. 관련 지정계획은 군산시 수산산업과(☎ 063-454-3032,3034)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관리기본계획

군산시(수산산업과), 063-454-3032, 3034

I.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군산시(수산산업과)

2. 위치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오식도동 1107~1108, 1122~1128 (새만금수산식품수출가공단지, 약칭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다. 수산식품산업 특화하여 스마트기반 수출가공 수산식품단지 조성

라. 김산업 스마트 융복합 등 미래 첨단 산업 선도하여 글로벌 블루푸드테크 식품단지 조성

4. 추진경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08. 5. 6.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08. 9. 24.
- 1공구(1.9km², 582만m²) 매립공사 '09. 3. ~ '12. 3.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0. 7. 19.
- 2공구(2.55km², 1,169만m²) 매립공사 '11. 12. ~ '14. 12.
-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1. 1. ~ 5.
- 관리기본계획 고시 '11. 4. 8.
-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4. 26.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13. 6. 28.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3. 8. 16.
-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3. 25.
-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14. 7. 4.
-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14. 11. 25.
-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5. 9. 30.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5. 11. 6.
-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16. 1. 4.
-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5. 12.
-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17. 7. 3.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8. 9. 28.
-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18. 12. 31.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9. 7. 9.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19. 9. 30.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 '20. 2. 25.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 '20. 8. 12.
- 실시계획 변경(12차) 고시 '20. 9. 9.
-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고시 '20. 12. 23.
- 실시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 '21. 3. 23.
- 실시계획 변경(15차) 승인 고시 '21. 12. 31.
- 개발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 '22. 3. 18.
- 실시계획 변경(16차) 승인 고시 '22. 5. 2.
-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고시 '22. 8. 24.
-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18차) 변경 고시 '22. 9. 30.
-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19차) 변경 고시 '23. 3. 20.
-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고시 '23. 6. 30.
- 개발계획 변경(18차) 및 실시계획(21차) 변경 고시 '23. 10. 27.
-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22차) 변경 고시 '24. 3. 5.
-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23차) 변경 고시 '24. 9. 6.

5. 분양 및 임대 현황

구분(업종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개소(개)	(단위 : m ²) 운영 주체
		분양(개)	임대(개)	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8,465,287	-	-	18,465,287	-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합계	266,073	15	9	266,073	24	-
스마트수산가공센터	33,029	1	-	33,029	1	군산시
민간 공장시설(분양)	134,221	13	-	134,221	13	민간업체
민간 공장시설(임대)	50,977	-	9	50,977	9	민간업체
김산업 블루푸드테크 센터*	47,846	1	-	47,846	1	군산시

- 민간업체 분양·임대 면적 및 업체수는 신청사항 및 군산시 입주심사 결과 따라 변동가능

※ 김산업 블루푸드테크 센터 : 28~32년까지 김산업 스마트양식 융복합 사업
추진예정, 사업 추진 불가시, 민간기업 등 분양으로 조성계획 변경추진

6. 입주상황

구분	입주 업체수(개사)			면적(m ²)		
	분양(민간)	분양(공공)	임대	분양(민간)	분양(공공)	임대
계획	13	2	9	134,221	80,875	50,977
현재	6	1	8	50,065	33,029	47,151

7.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구분	주요 기반 시설		근거
교통 시설	도로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차로) / 새만금 동서남북로 ○ 도로 308개, 폭원 11~40m, 2~8차로, 연장 127km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 기반시설 현황
	철도	○ 군장국가산단 인입 철도(운용, 단선) / 새만금항 인입철도(계획 중)	
	항만	○ 군산항(운용 중, 부두 31선석, 하역능력 27,970천톤/연) ○ 새만금 신항만(건설 중, 부두 9선석, 하역능력 15,781천톤/연)	
	공항	○ 군산공항(운용 중) / 새만금 신공항(기본계획 중)	
공급 시설	용수	○ 공업용수 연간 수요량 401천톤/yr ○ 금강 광역상수도(공업)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
	전력	○ 전력사용량 예측 5,185.1MW/yr	
	가스	○ LNG 100,000m ³ /hr 공급(군산2국가산단)	
환경 기초	오폐수 처리	○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통합 운영(43천톤/일, 산단 내 오·폐 수 통합이송펌프장 운영)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157,598m ³)	
해수 시설	해수 공급	○ 해수 취수 및 공급시설 3만톤/일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내 기반시설 현황
	해수 처리	○ 해수 세척수 공동배출시설 2만7천톤/일	
기반	내부 도로	○ 사도개설 허가(군산시 제2025-1호), 도로(폭 15m, 길이 608m), 우수, 오수, 하수, 해수 인배수 관로	

II. 산업단지 관리기본방향 및 주요 투자유치 업종

1. 관리기본 방향

- 단지 내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산단 입주관리
- 희망기업의 수요에 맞춘 탄력적 업종배치로 입주 적기 지원
-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공간 조성
- 수산 식품산업 및 수산업 발전과 육성 지원을 위한 수산식품 단지 조성

2. 산업용지 투자유치 업종

가. 산업육성 업종

- 1) 수산식품분야 고부가가치식품산업, 1·2·3차 산업 융복합(식품제조업)

나. 산업단지 입주우선 순위

- 1) 분양공고를 통한 군산시 입주심사위원회 입주심사 우선순위 업체
- 2)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 3)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III.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 가. 업종별 구역면적 : 산업시설용지 266,073m²
- 나. 수산식품단지 구역 평면도 : 별첨 1

2. 산업시설구역

- 가. 용도별 면적구분 : 공장시설용도 266,073m²

나.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수산식품분야 고부가가치식품산업(102), 1·2·3차 산업 융복합(식품제조업)

* 1·2·3차 산업 융복합 업종의 경우 제조, 가공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입주 가능

다. 입주제한

- 1)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 2)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

*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여 입주 제한

- 3) 용수 과소비 및 공해 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입주자격

-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본계획 III. 2. 1)의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2)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마. 입주심사

- 1)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군산시 입주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2) '군산시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바.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바. 업종별 배치기준

1)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을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면적, 계획은 군산시 세부계획에 따른다.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임대산업용지

가. 사업추진 목적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용지 제공

나. 위 치 : 새만금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내 임대용지

다. 운영계획 : 50,977.5㎡

라.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마.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1)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2)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3)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바.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사.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4.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다. 단,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IV.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조례 및 관리규약 준수해야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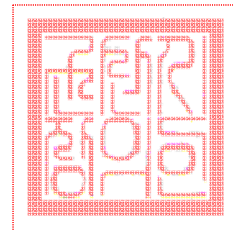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 2026-20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위신청건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1.

군 산 시



1. 공고내용 : 지적공부 정리 등기완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 김은* 외 6건
3.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6. (14일간)
4. 공고장소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063-454-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시송달조서 1부. 끝.

공시송달조서

순번	토지이동 종목	동·리	이동전			이동후			성명	주소	송달사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토지분할	나포.나포	162-22	전	1322	162-22	전	1249	김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길 **, ***동***호(수송동, 현대아파트)	폐문부재
						162-24	전	15			
						162-25	전	52			
						162-26	전	3			
						162-27	전	3			
2	임야분할	옥산.당북	88-3	임야	571	88-3	임야	217	김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당 북리 ****-	폐문부재
						88-19	임야	354			
3	토지분할	대야.죽산	1372	답	3760.4	1372	답	3751	송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길 **, ***호(행당동, 지웰홈스왕십 리)	폐문부재
						1372-1	답	9.4			
4	토지분할	대야.보덕	1007	답	3726	1007	답	3685	장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목련아파트 *****	폐문부재
						1007-3	답	41			
5	토지분할	대야.보덕	1015	답	3150	1015	답	3111	정명*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 ***동 ***호(나운동, 영창아파트)	폐문부재
						1015-7	답	39			
6	토지합병	대야.보덕	1007-2	답	166	1007-2	답	207	장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목련아파트 *****	폐문부재
			1007-3	답	41						
7	토지합병	대야.보덕	1015-3	답	264	1015-3	답	303	정명*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 ***동 ***호(나운동, 영창아파트)	폐문부재
			1015-7	답	39						

군산시 공고 제2026 - 2070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서수면	리도	외무장선	서수 리도206호	서수면 축동리 770	서수면 축동리 636	1.043	축동리	7.5~10	6	농어촌도로 확·포장

2. 사 업 명 : 서수 리도 206호(외무장선) 도로확포장공사

3.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및 편입토지의 지목(세목)·면적 정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노
선지정(변경)

4.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7. 12. 31.

5. 사업시행 : 군산시청 건설과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변경)

7. 지형도면도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사무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분할 (변경)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59필지)								15,054						
1	서수	축동	770	770	770	구	1,373	34	국(농림부)					
2	서수	축동	284-6	284-6	284-6	도	30	30	김*금	옥구군 서수면 축동리 ***				
3	서수	축동	283-2	283-2	283-2	제	873	139	국(농수산부)					
4	서수	축동	284-2	284-2	284-2	도	3	3	김*금	옥구군 서수면 축동리 ***				
5	서수	축동	283-1	283-10	283-10	유	3,147	772	국(농수산부)					
6	서수	축동	285-2	285-2	285-2	도	66	66	김해*선	옥구군 서수면 축동리 ***				
7	서수	축동	723	723	723	도	618	70	국(건설부)					
8	서수	축동	281-1	281-1	281-1	천	35	35	김*근	경성부 종로구 효제동 ***				
9	서수	축동	281	281-3	281-3	천	2,874	201	김*근	경성부 종로구 효제동 ***				
10	서수	축동	280-1	280-1	280-1	제	366	271	군산시					
11	서수	축동	280	280-5	280-5	답	1,128	316	노*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41 성북역신도브래뉴아파트 ***				
12	서수	축동	724-2	724-2	724-2	구	3,702	75	국(농림부)					
13	서수	축동	279-5	279-5	279-5	제	210	156	군산시					
14	서수	축동	279-2	279-12	279-12	답	1,235	183	군산시					
15	서수	축동	279-4	279-4	279-4	제	64	55	군산시					
16	서수	축동	279-1	279-11	279-11	답	1,103	108	군산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분할 (변경)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7	서수	축동	277-4	277-4	277-4	제	542	339	군산시					
18	서수	축동	277-1	277-12	277-12	답	3,756	705	김*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				
19	서수	축동	277-2	277-2	277-2	답	231	231	김*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				
20	서수	축동	277-3	277-3	277-3	제	159	63	국(농수산부)					
21	서수	축동	266	266-4	266-4	답	632	185	김*호	군산시 미장동 ***				
22	서수	축동	266-1	266-1	266-1	제	102	45	군산시					
23	서수	축동	267	267-4	267-4	답	980	388	조*하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				1/3
									조*하	익산군 웅포면 제성리 ***				1/3
									조*홍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				1/3
24	서수	축동	267-1	267-5	267-5	답	207	56	조*하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				1/3
									조*하	익산군 웅포면 제성리 ***				1/3
									조*홍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				1/3
25	서수	축동	268	268-3	268-3	답	4,298	33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 가람동)				
26	서수	축동	268-1	268-1	268-1	제	29	29	군산시					
27	서수	축동	265-1	265-1	265-1	구	706	36	군산시					
28	서수	축동	724-5	724-5	724-5	구	1,437	370	국(농림부)					
29	서수	축동	258-5	258-17	258-17	답	3,337	1,120	서*자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분할 (변경)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외무장길 ***				
30	서수	축동	258-14	258-18	258-18	답	382	239	서*자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				
31	서수	축동	730	730	730	도	464	12	국(건설부)					
32	서수	축동	261-7	261-7	261-7	구	161	4	군산시					
33	서수	축동	260	260-3	260-3	답	1,534	40	김*섭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				1/3
									김*욱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				1/3
									김*섭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				1/3
34	서수	축동	724	724	724	구	4,168	107	국(농림부)					
35	서수	축동	244-2	244-22	244-22	답	4,274	1,455	김*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				
36	서수	축동	244-1	244-21	244-21	답	3,499	213	김*성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92 ***				1/4
									김*수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				1/4
									군산시					1/4
									서*자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 길 ***				1/4
37	서수	축동	244-14	244-14	244-14	답	94	94	군산시					
38	서수	축동	244-5	244-23	244-23	답	512	7	김*호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				
39	서수	축동	238-1	238-6	238-6	답	4,215	1,069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0	서수	축동	237-1	237-6	237-6	전	413	258	라*은	익산군 오산면 신지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분할 (변경)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41	서수	축동	237	237-5	237-5	전	370	77	라*은	익산군 오산면 신지리	나*선	대전 서구 괴정 동	근저 당권	
42	서수	축동	238-2	238-8	238-8	답	3,028	472	김*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길 **				1/20
									김*석	이리시 신동 ***				5/20
									군산시					14/20
43	서수	축동	산 141-10	산 141-17	산 141-17	임	1,455	21	군산시					
44	서수	축동	산145	산 145-2	산 145-2	임	5,851	90	김*일	옥구군 서수면 축동리 ***				
45	서수	축동	산 146-3	산 146-5	산 146-5	임	902	107	전*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32번길11				165.45/ 902
									전*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2, (오류동, 삼성아파트)				165.45/ 902
									군산시					165.45/ 902
									군산시					165.45/ 902
									오*산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산길				240.2/ 902
46	서수	축동	643	643-2	643-2	답	4,003	690	천*복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2로 20, ***				1/2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 시 번 영로	근저당 권	1/2
											최*천	개정	근저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분할 (변경)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면 바 르메 길	권	
47	서수	축동	산147	산 147-2	산 147-2	임	2,678	282	김*석	이리시 갈산동 ***				1/3
									김*수	군산시 선양동 ***				1/3
									김*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92 ***				1/3
48	서수	축동	729	729	729	도	2,013	1,077	국(건설부)					
49	서수	축동	642-1	642-8	642-5	답	1,388	324	김*호	옥구군 서수면 축동리 ***	김*창	서수 면 축 동리	이전청 구권가 등기	1/4
									김*호	옥구군 서수면 축동리 ***				1/4
									김*일	옥구군 서수면 축동리 ***				1/4
									김*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				1/4
50	서수	축동	644	644-2	644-2	전	926	167	채*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 동	서수농업 협동조합	서수 면 서 수리	근저당 권	3/9
									이*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 동				2/9
									이*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 동				2/9
									이*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 동				2/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분할 (변경)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51	서수	축동	642-2	642-9	642-9	답	460	87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 시 번 영로	근저당 권	
52	서수	축동	642-3	642-10	642-10	구	268	47	이*석	옥구군 임피면 읍내리 241				
53	서수	축동	산148	산 148-2	산 148-2	임	10,909	83	김*석	이리시 갈산동 ***				1/3
									김*수	군산시 선양동 ***				1/3
									김*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				1/3
54	서수	축동	638-2	638-7	638-7	답	1,435	298	김*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				
55	서수	축동	산149	산 149-2	산 149-2	임	1,884	359	김*준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				1/3
									김*욱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				1/3
									김*각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				1/3
56	서수	축동	638-1	638-1	638-1	답	283	47	군산시					
57	서수	축동	638	638-6	638-6	답	656	156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				
58	서수	축동	산150	산 150-2	산 150-2	임	37,785	384	안동****공파종 중	옥구군 서수면 마룡리 ***				
59	서수	축동	633-3	633-5	633-5	답	4,149	371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번영로	근저당 권	
											최*천	개성면 바탕매길	근저당 권	

○ 보상조서(물건)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비
						주소	성명	
1	서수면 축동리	633-5	벗나무		1주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천*순	
			철쭉		5주			
			조경석		7m			
			백일홍		1주			
			엄나무		5주			
			반송		2주			
			감나무		8주			
			매실나무		1주			
2	서수면 축동리	642-9 642-10	헛개나무		5주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천*순	
			매실나무		2주			
3	서수면 축동리	644-2	홍가시		30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81	채*희 외 3	
4	서수면 축동리	643-2	무궁화		31주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천*순	
5	서수면 축동리	238-8	무궁화		11주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김*엽 외 3	
			백일홍		3주			
			홍가시		92주			
			감나무		4주			
6	서수면 축동리	산147-2	대추나무		1주	이리시 갈산동	김*석 외 2	
			백일홍		20주			
			자두나무		7주			

군산시 공고 제2026-211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아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사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6. 9. 1. ~ 2026. 9. 21. (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 ~ 2026. 9. 21.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454-6030)

라. 제출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17(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의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계 ☎ 063)454-3513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변경)사유	관리기관
			유형	등급	면 적		
당초	대항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 일원	붕괴 위험	E	A=1,971㎡	상부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피해 우려	군산시청
변경	대항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 일원	붕괴 위험	E	A=1,855㎡	사면붕괴 및 유실 등 낙석영향범위 가옥 추가 및 일부 면적 변경(축소)	군산시청

5.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대항	2023. ~ 2027.	700	지장물 철거 1동, 흙깎기 4,224㎥, 구조물터파기 536㎡, 수로관 설치 L=273m, 부대공 1식 등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예산(국지방비)지원계획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위

－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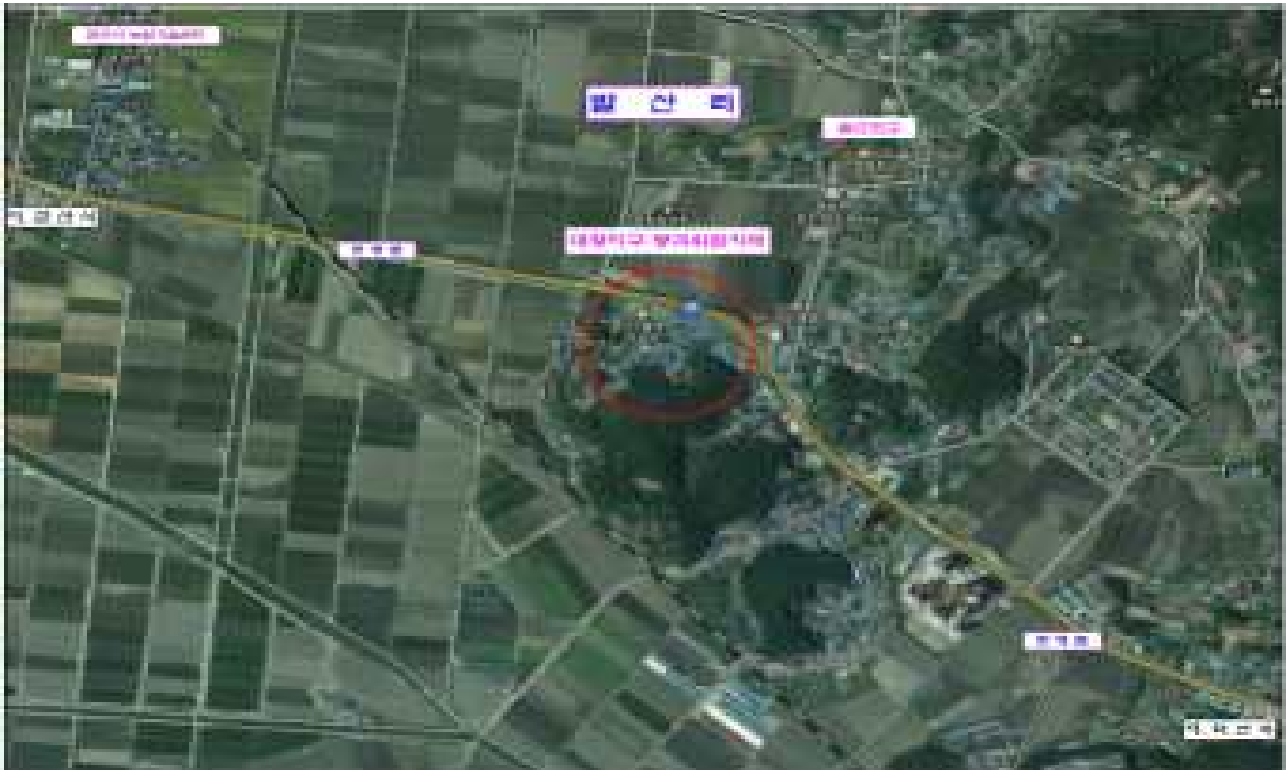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가.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군산시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와 협의하여야 함.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현황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 사업 위치도

□ 변경 전 · 후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